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

지정 통보 ·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용

수 신		문서번호	
소속 / 직위		통 보 일	년 월 일
통보 구분	☐ 1차 촉구분에 대한 통보 (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) ☐ 추가 발생분에 대한 통보 (최초 1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)		

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.

입 사 일	년 월 일	최초 **1**년 만료일	년 월 일
촉 구 일	년 월 일	미사용 일수	일

회사가 지정한 사용 시기

연번	사용일	일수	구분(연차/반차)	비고
1	년 월 일			
2	년 월 일			
3	년 월 일			
4	년 월 일			
합계		일		

년 월 일

회 사 명 :

대 표 자 : (직인)

수령 확인 : 소속 성명 (서명 또는 인) 수령일 년 월 일

※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, 같은 호 단서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